

□ 변경 대비표

변경시행일 : 2017년 6월 1일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투자자신탁[주식혼합]

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2조 (용어의 정의)	<p>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투자자신탁[주식혼합]</p> <p>제2조 (용어의 정의)</p> <p>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8. <생략></p> <p><신설></p>	<p>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투자자신탁[주식혼합]</p> <p>제2조 (용어의 정의)</p> <p>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8. <생략></p> <p>9. " 모자형 " 이라 함은 법 제233조 규정에 의한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p>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p>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p> <p>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투자자신탁[주식혼합]"이라 한다.</p> <p>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p> <p>1.~5. <생략></p> <p><신설></p> <p>③ <생략></p> <p><신설></p>	<p>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p> <p>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투자자신탁[주식혼합]"이라 한다.</p> <p>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p> <p>1.~5. <현행과 같음></p> <p>6. 모자형</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이 신탁계약의 시행일 현재,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p>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p>제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p> <p>① <생략></p> <p><신설></p> <p>②~③ <생략></p>	<p>제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이 투자신탁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한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16조 (투자목적)	<p>제16조 (투자목적)</p> <p>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6조 (투자목적)</p> <p>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p>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p>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과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 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이하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이하 " 주식 " 이라 한다)</p> <p>2.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p>	<p>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p>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의 수익증권</p> <p>2.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3. 법 시행령 제34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p> <p>4.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p>

<p>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계속)</p>	<p>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모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된 사채권의 경우 상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p> <p>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p> <p>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에 한한다).</p>
<p>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계속)</p>	<p>다만, 이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모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된 어음의 경우 상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 "어음 등"이라 한다)</p> <p>5. 금리스왑거래</p> <p>6.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p> <p>7.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p> <p>8.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역</p>
<p>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계속)</p>	<p>9. 환매조건부 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p> <p>10. 증권의 차입</p> <p>11.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p>1. 법 시행령 제3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p> <p>2. 금융기관에의 예치(자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p>

<p>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p>	<p>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무 증권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무 증권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6.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7.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p>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p> <p>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2.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모투자신탁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초과로 한다. 3.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p>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계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10.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로 한다. 	
<p>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p>	<p>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p>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p>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p>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 (계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제 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p>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 자신탁)으로 변경: 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 (계속)</p>	<p>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p>
<p>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 자신탁)으로 변경: 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 (계속)</p>	<p>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 자신탁)으로 변경: 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 (계속)</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p>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5.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 자신탁)으로 변경: 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 (계속)</p>	<p>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8.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p>9.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p>

<p>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p>	<p>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계속)</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19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제19조 제2호 가목 및 제3호 본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25조의 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청구)</p>	<p><신설></p>	<p>제25조의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청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할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p>
<p>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26조의 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청구)</p>	<p><신설></p>	<p>제26조의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청구)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투자신탁의 자금으로 환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날에 모투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p>
<p>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p>	<p>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③ <생략>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 및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30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p>	<p>제30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p>	<p>제30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p>

<p>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35조 (상환금 등의 지급)</p>	<p>제35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p>	<p>제35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 및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p>
<p>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37조 (수익자총회)</p>	<p>제37조 (수익자총회) ④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관련 법령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신설></p>	<p>제37조 (수익자 총회) ④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관련 법령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이하 현행과 같음> ⑩ 모투자신탁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어 그 수익자 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p>	<p>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 ①~③ <생략> ④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함)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p>	<p>제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④ <생략> ⑤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한BNPP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현재 기준)으로 전환(모자형 전환 등)하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 신한BNPP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현재 기준)으로 전환(합병, 모자형 전환 등)한다.</p>	<p>제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삭제</p>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 2.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항목	정정전	정정후
<p>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p>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2017년 4월 30일)</p>
<p>2.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p>	<p>신한BNPP공모주&밴드 트레이딩5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신설></p>	<p>신한BNPP 공모주& 밴드 트레이딩50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p>

<p>2.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p>	<p>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형(혼합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p> <p><신설></p>	<p>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형(혼합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p> <p>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p>
<p>2.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p>	<p>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2.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p>	<p>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 주식 2. 채권 3. 자산유동화증권 4. 어음 등 5. 금리스왑거래 6. 집합투자증권 등 7. 주식및채권관련 장내외파생상품 8. 증권의 대여 9. 환매조건부 매도 10. 증권의 차입 11.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1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 집합투자증권 투자비용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의 수익증권 : 100% 이하 상기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50% 초과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 10% 이하 3.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2.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p>	<p>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신설></p>	<p>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p>
<p>2.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p>	<p>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신설></p>	<p>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p>
<p>2.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p>	<p>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50% 수준을 국채, 통화안정증권, 우량 회사채 등의 채권에 투자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우량 가치주, 배당주, 공모주 등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2) 상세 투자전략 1) 채권운용전략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채, 통안채, 공사채, 지방채 등의 공공채에 투자하며 우량 회사채에도 선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듀레이션을 1년 내외로 제한하여 금리 상승시 자본손실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2)주식운용전략 - 우량가치주 및 배당주에 대한 저점 매수와 박스권 트레이딩을 통하여 주식 매매 차익을 추구하며 일부 공모주에도 선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의 수익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로 투자합니다. (2) 상세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50% 수준을 국채, 통화안정증권, 우량 회사채 등의 채권에 투자하며, 투자신탁 재산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우량 가치주, 배당주, 공모주 등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p>

<p>2.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계속)</p>	<p>- 30종목 내외의 압축포트폴리오로 구성되며 주식편입비율 0~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p> <p>※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아래 세 경우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계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한BNPP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 제1호[채권]"(현재 기준)으로 전환(모자형 전환 등)할 예정이며,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해지하거나 집합투자계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한BNPP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 제1호[채권]"(현재 기준)으로 전환(합병, 모자형 전환 등)될 예정입니다.</p> <p>1)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 원 미만인 경우 2)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p>	<p>삭제</p>
<p>2.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계속)</p>	<p>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채권 및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주된 투자대상인 채권의 이자수익 및 가격 변동으로 인한 자본손익과 국내 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p>	<p>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채권 및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주된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p>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항목	정정전	정정후
<p>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제1부</p>	<p>투자자 유의사항 ◆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한BNPP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 제1호[채권]"(현재 기준)으로 전환(모자형 전환 등)하며,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 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임의해지 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한BNPP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 제1호[채권]"(현재 기준)으로 전환(합병, 모자형 전환 등)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투자자 유의사항 삭제</p>
<p>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제1부</p>	<p>신한BNPP공모주&밴드 트레이딩 50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제1부 집합투자기구 특징 :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형(혼합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p>	<p>신한BNPP공모주&밴드 트레이딩 50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제1부 집합투자기구 특징 :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형(혼합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p>
<p>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제2부 I. 투자전략 1. 투자목적</p>	<p>제2부 I.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부 I.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1.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제2부 I. 투자전략 2. 투자전략</p>	<p>제2부 I. 투자전략 2.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50% 수준을 국채, 통화안정증권, 우량회사채 등의 채권에 투자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우량 가치주, 배당주, 공모주 등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p> <p><신설></p>	<p>제2부 I. 투자전략 2.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1)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의 수익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로 투자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 등에 투자하여 해당 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p>
---	--	--